

갑오·대한제국기(1895~1905년)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한성재판소를 중심으로

황 외 정**·이 영 학***

1. 머리말
2.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제도의 정비
 - 1) 민사재판제도의 변화
 - 2) 민사재판의 실태
3.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 관리 현황
 - 1) 민사재판 판결문의 현황
 - 2) 민사재판 판결문 관리 실태와 문제점
4.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열람 및 활용 방안
 - 1) 민사재판 판결문의 열람 유형
 - 2)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 방안
5. 맺음말

*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14) 「구한말(1895~1905년간)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를 보완·수정한 것임.

** 경희대학교 기록관 설립자기록물정리TF팀(주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이영학 교수(교신저자).

▪투고일 : 2014년 12월 19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월 21일

[국문초록]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주제어 : 갑오정권, 대한제국, 역사기록물, 민사재판, 한성재판소

1. 머리말

한국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정권(1894~1896년) 이후이다.¹⁾ 갑오정권은 근대 기록관리제도를 정립하기도 하였다. 조선시기의 공문서 양식을 바꾸었으며, 사용문자도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혼용으로 바뀌었고, 연호도 중국 연호에서 한국 독자의 연호로 바꿈으로써 조선의 독자성을 강화하였다.²⁾ 근대적 사법제도는 일제 식민지

1) 도면희, 『한국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161~195쪽.

2) 이영학, 「갑오개혁 시기 기록관리제도의 변화」, 『기록학연구』 27호, 한국기록학회, 2007.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로 계승·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에 대한 고찰은 지금의 사법제도의 연원과 성격을 고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성재판소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개설되어 1908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으로 구재판소(區裁判所)로 대체되는 시기까지 존속하였다. 근대 재판제도에 따라 시행된 민사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³⁾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대 사회의 통치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사회인식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활용가치가 높은 역사기록물이다. 또한 당대 국민들의 생활상과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기록물 관리는 행정기록물(Records) 관리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갑오개혁기-일제강점기의 기록이 그 통치기간이나 통치의 강고함에 비해 역사기록물이 많이 남겨져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은 물론 통일적인 정리와 이용제공의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갑오·대한제국기의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은 역사기록물의 다양한 가치를 제고하고, 역사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역사학과와 기록학계에서 민사재판 판결문을 직접 인용하거나 이용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갑오·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민사재판 판결문의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역사기록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김항기,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私權 신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제도의 정비

이 장에서는 민사재판 제도의 변화상을 두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시기는 갑오개혁(1894)부터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는 1899년 5월경까지, 다음은 그 후부터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까지 두 시기이다. 이는 두 시기 사이에 정치권력 구조나 재판소의 위상에 큰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 시기 역사적인 배경 및 법제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판결문이 생산된 배경을 유추할 것이다.

1) 민사재판제도의 변화

(1) 갑오정권·대한제국 초기 민사재판제도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이를 진압하고자 원병을 보낸 청과 자국 영사관 및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조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 국면에 들어갔다. 이후 5월 7일 정부와 농민군의 전주화약 체결로 일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자 6월 1일 일본공사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는 ‘내정개혁안’을 제시했다.

오토리 케이스케의 내정개혁안에서 법률과 재판제도에 대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이다. 신법을 제정할 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선을 일본에 예속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 것이다.⁴⁾ 이후 1894년 10월 23일에서 24일에 걸쳐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고종에게 제출한 ‘내정개혁안’과 1895년 3월 호시토루(星亨)가 법무고문관으로 임용되는 사실을 보면 그 의도가 더욱 확

4) 도면희, 앞의 글, 2014.

연해진다.⁵⁾

이러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조선정부는 1894년 6월 28일 의안 「각아문관제」를 통해 형조를 폐지하고 재판권의 독립과 민사·형사 등 사법정책을 총괄할 기관으로서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는 비록 법령에 불과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었다. 이 때부터 ‘법률’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의안’이라는 종전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실제로 설치된 것은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뿐이었다. 그러나 고등재판소도 독립된 별도의 건물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법부 내에 임시로 개정한다.”⁶⁾고 하여 법부 건물 내에 설립되었다.

고등재판소가 법부 내에 임시 개정되는데다가 과거 의금부와 같은 지위까지 겸한데 반하여 한성재판소는 독립 건물을 가진 독자적인 재판기관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한성부에서 수리한 민사·형사소송 중 아직 판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을 모두 한성재판소로 이관시켰다.⁷⁾

그런데 한성재판소가 한성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34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건들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사법행정상으로도 많은 혼란이 따랐다. 이에 1897년 9월 12일 「한성재판소관제·규정」으로⁸⁾ 경기도내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한성재판소의 지역 및 사물관할도 5서(署) 내의 민·형사 사건에 한정하였다. 이후 1898년 관제 변경으로 인한 우여곡

5) 星亨의 활동에 대하여는 윤소영, 「갑오개혁기 일본인 고문관의 활동-星亨을 중심으로-」, 『안중근과 한일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참조

6) 「裁判所構成法」 제22조(1895. 3. 25)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194쪽.

7) 法部令 제1호 「漢城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 345~346쪽.

8) 「漢城裁判所官制·規程」(1897. 9. 1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 277~279쪽.

절을 겪었지만 법무관리나 지방관리가 아닌 전임판사·검사가 상당수 임명되어 본래 의미의 사법관의 독립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2) 대한제국 후기·통감부시기 민사재판제도

1895년 명성황후 피살 이후 고종은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1896년 2월에 이범진·이완용·이윤용 등 친러계열 개화파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모의하여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시켰다.⁹⁾ 이후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 후 전국을 23부(府) 체제로 나누어 운영하던 지방제도는 다시 개편되었다. 한성에는 특별히 1부를 그대로 두되 전국 23부를 13도로 개편하고 각 도에 관찰사를 배치하여 개혁 이전과 유사한 제도로 바뀌었다.¹⁰⁾

또한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독립재판소로 개설되었다가 다시 이를 모두 폐지하고 한성부와 경기도에 합설하는 사법제도상의 후퇴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로 기본법인 '재판소구성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결국 1899년 5월 30일 법률 제3호로 '재판소구성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¹¹⁾

개정법의 특색은 갑오개혁 때의 본 취지와는 달리 재판기관을 모두 지방행정기관에 합설하게 하고, 판사도 지방관으로 충당하여 겸임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상당부분 개혁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평리원이 명목상 독립되어 있었으나 재판장이나 판사는 일반 행정관직을 담당한 관리가 겸임하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주요사건은 법무대신의 지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법관양성소의 사실상 폐지 등

9) 법원행정처,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23쪽.

10) 제35호 「지방제도·지방관제·각부직원봉급·각부고원봉급·각부청경비배정·각군경비배정·군수관등봉급의 시행을 폐지하는 건」, 『구한국관보』 建陽 元年 8月 6日; 칙령 제36호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 개정」, 『구한국관보』 建陽 元年 8月 6日.

11) 法律 제3호 「裁判所構成法改正案」, 『구한국관보』 光武 3年 6月 5日.

은 역시 구(舊)제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법제도 근대화의 후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 한성재판소는 1900년 11월 관제를 전면 개정하여 명칭도 한성재판소로 바뀌었으며, 수반판사를 한성판윤이 겸임하고 판사 1인을 한성소윤이 겸임하게 했던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 후 불과 1년도 안되어 1901년 7월 22일 한성부재판소 관제를 다시 개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행정관이 판·검사를 겸임하는 규정을 부활시켜 수반판사는 역시 한성판윤이 겸임하고 판사 3인 중 1인은 소윤이 겸임하도록 하였다.¹²⁾

한성부 재판소 관제는 1904년 4월 2일 또다시 개정되었다. 이번에는 행정관의 판검사 겸임제를 없애고 각 직책의 등급까지 명시한 점이 특색이다. 즉 수반판사는 주임 1등관, 판사와 검사는 주임 4등관 이상, 검사시보는 5등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¹³⁾

2) 민사재판의 실태

(1) 재판절차 전반의 변화

1895년 3월 이후 재판권은 법부와 그 산하 각급 재판소가 일원적으로 관장하고 재판을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을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재판의 원고 또는 피고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재판소 관할을 달리하던 구래의 제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 민인이나 하급관리의 경우에는 ‘군수재판 →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의 단계를 거치거나 ‘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 → 고등재판소’의 단계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다.¹⁴⁾ 이와 같이 일반 민인이나 하

12) 「漢城裁判所 改正件」, 『舊韓國官報』 光武 4年 12月 3日; 勅令 第16호 「漢城府裁判所 改正件」, 『舊韓國官報』 光武 5年 7月 24日.

13) 「漢城裁判所官制 改正」(1904. 4. 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I, 590~592쪽.

급관리의 경우에는 심급제가 적용되었지만, 칙임관·주임관 등 고급관리는 고등재판소에서, 왕족은 특별법원에서 각각 단심제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심급제는 다소 불분명한 상소제도가 적용되고 양반·관리·왕족의 범죄 및 유교적 신분질서를 어지럽힌 범죄 등에 대해서는 의금부가 단심제를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형조·한성부·사헌부·의금부 등 관장업무가 상이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재판 업무를 재판소라는 기구로 일원화한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규정은 1895년 4월 29일의 법부령 제3호 ‘민형소송에 관한 규정’(이하, ‘민형소송규정’으로 약칭)에 의하여 마련되었다.¹⁶⁾ 이 법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절차를 고소 단계부터 상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절차법으로 이를 계기로 한국은 비로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재판하는 근대적 재판절차를 가지게 되었다.¹⁷⁾

그러나 새로운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에 민사에 관한 실체법령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전회통』의 민사관계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갑오개혁 초기에는 신분·계층·성(性) 차별을 폐지하는 법령이 다수 공포되었다.

대한제국기에 이르러서도 민사관련 실체 법령의 제정은 아무래도 형사관련 법령의 제정보다 지지부진한 면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까지 종래의 관습과 구래의 법전에 의하여 민사관계 소송이 비교적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정부의 입장은 형사법령보다 미온적이었고, 실체법령을 필요

14) 도면회, 앞의 글, 2014.

15) 도면회, 앞의 글, 2014.

16) 「民刑訴訟에 관한 規程」,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367~376쪽.

17) 손경찬, 「民刑訴訟規則의 制定과 意義」, 『법사학연구』 제30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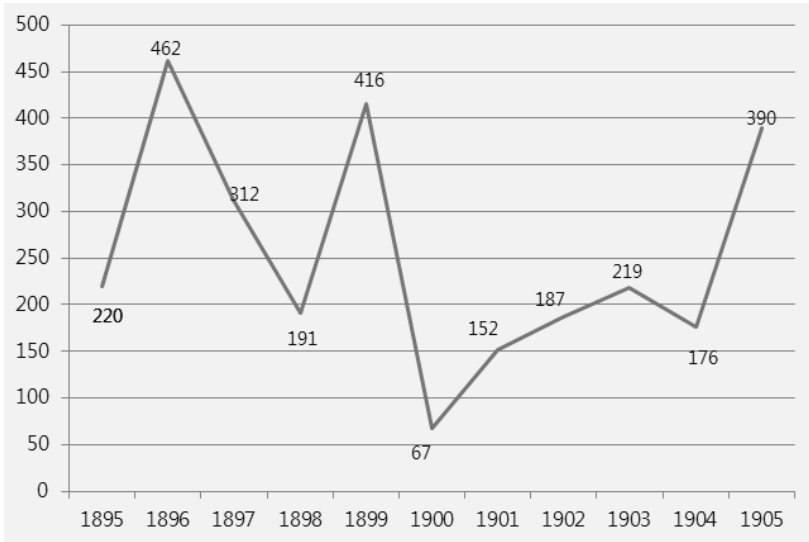
에 따라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1895년 ‘재판소구성법’ 체제하의 민사판결

1895년 ‘재판소구성법’ 시기의 민사 분쟁의 양상과 민사재판의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재판통계가 없다는 점이다.¹⁸⁾ 현존하는 민사재판 판결문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민사사건의 양과 추이를 파악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¹⁹⁾ 그나마 한성(부)재판소의 민사재판 판결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구한말 민사판결집』에는 한성(부)재판소와 관련하여 40여 권이 해당되어 재판통계의 흠결을 보완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그림 1>은 1895년부터 1905년까지 한성(부)재판소의 민사판결 사건 수를 나타낸 것이다.²⁰⁾

-
- 18) 통계연보에 한국인의 민형사사건에 관한 재판통계가 실리는 것은 1909년도 『統監府統計年報』부터이다.
 - 19)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舊韓末 民事判決集』(전 52권, 2007)에는 고등재판소·평리원, 한성(부)재판소, 경기재판소, 한성·인천의 일본영사관의 민사판결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구한말 민사판결문’서비스를 통해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소장된 1918년까지의 각급 법원의 민사판결서철을 검색하고 원문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누락된 것들이 있으며 경상·전라지역 등은 서비스 되지 않고 있다.
 - 20) 한성(부)재판소의 사건통계는, 법원도서관이 간행한 『구한말 민사판결집』(전 52권)(법원도서관, 2007)에 수록된 판결들 중 한성(부)재판소에 해당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사건명은 원래 판결서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판결철에 첨부된 판결목록에 기재된 것이다. 접수·판결 당시에 사건 수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 재판제도 시행 후에 판결서철을 정리하고 판결목록을 만들면서 재판소서기 등이 적절한 사건명을 붙인 것이라 추측된다.

〈그림 1〉 갑오·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 민사사건 수



판결건수의 추이를 보면,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1896년이 462건으로 사건 수가 가장 많고, 이후 1897년~1898년에 판결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시기 판결건수의 감소는 1897년 9월 이전에는 한성재판소가 경기도까지 관할하다가 경기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종래 한성재판소에서 다루던 사건들이 경기재판소로 흡수된 탓도 있을 것이다. 이후 1900~1904년간 사건수가 적었던 것은 정권의 보수화, 러일전쟁, 한성재판소의 한성부와의 잦은 합설과 분리에 따른 재판업무의 단속(斷續) 등에 영향을 받은 바가 없지 않을 것 같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결문 일부 유실되었을 수도 있지만, 판결문의 건수 자체가 훗날에 비해 적다.

한성재판소의 판결문 문안에서 나타나는 판결의 특징을 보면, 이 시기의 재판에서는 재판서류 및 재판절차상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구래의 재판관행과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토지관련 판결문 중에는 단 2개가 도매(盜賣), 이중도매(二重盜賣)에 관한 법 규정을 거론하였다.²¹⁾ 참고로 가옥 관계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간혹 법문상의 5일의 퇴한(退限), 즉 토지·가옥을 매매하였다가 조건 없이 되돌리는 환퇴(還退)가 가능한 기간을 언급한 것이 있다.²²⁾ 그러나 절대 다수의 판결들은 특별하게 법규에 대한 언급 없이 증서나 계약의 이행 여부 혹은 불법행위의 준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되었고, 일부 판결서들에서는 ‘이(理) 혹은 ‘사리(事理)’를 들면서 시비를 가리기도 하였다. 또한 극히 소수의 사건이지만, ‘택심불량(宅心不良)’이라고 하며 당사자의 마음가짐을 비난하거나, 당사자를 훈계하는 경우도 있다.²³⁾

이 시기의 판결문들을 보면 사건에 대한 ‘이유(오늘날의 판결요지)’ 부분의 분량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물론 1905년을 전후하여 판결서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동안의 실무 경험이 축적되고 신식법학 교육을 받은 자들이 판사로 임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1907년부터는 일본인 법무보좌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다.²⁴⁾

-
- 21) 한성재판소, 1902.4.30. 선고, 광무6년 민제360호 사건(田畝訟) 판결에서 『大典會通』 刑典 田宅條에 있는 (도매당한 원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한) 도매의 매수인(盜賣者)은 盜賣한 자에게 그 가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한성재판소, 1905.7.14. 선고, 광무9년 민제329호 사건(畝訟) 판결에서는 부동산 二重賣買와 관련하여 『刑法大典』(1905년) 제636조 즉 물건은 先매수인에게 귀속시키고, 대금은 後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
- 22) 한성부재판소, 1898.11.2. 선고, 광무2년 민제188호; 한성재판소, 1905.6.21. 광무9년 민제492호; 한성재판소, 1905.7.26. 선고, 광무9년 민제422호 등.
- 23)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제46호, 257쪽.
- 24) 법무보좌관 시기의 판결서 및 재판사무의 변화에 대해서는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연구』 39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441~454쪽.

3.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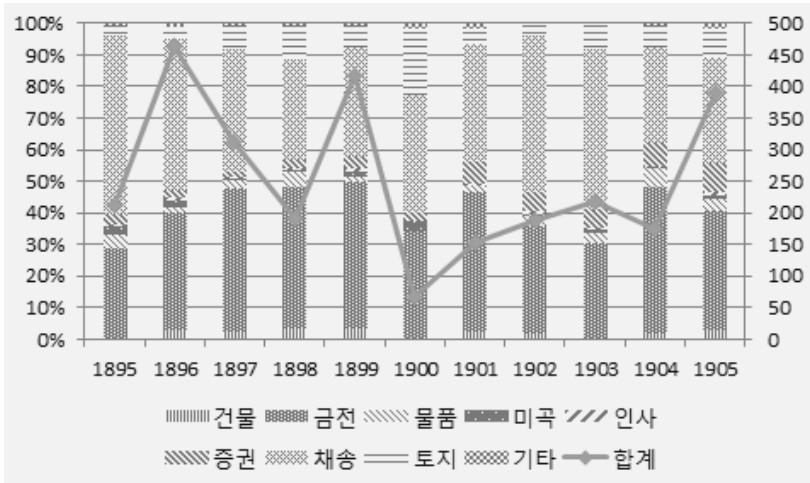
한성재판소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제정 이후 최초의 근대적 재판소의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적·행정적·외교적 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수도에 위치하여 외국인 교섭 사건도 처리하였다. 한성재판소는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구재판소(區裁判所)로 대체되는 1908년 8월까지 존속하였다. 이 시기는 공식적인 재판통계가 극히 미비하여 어떤 종류의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지만, 하급심의 판결 원본철은 재판통계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역사기록물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 판결문은 법체계를 비롯해 정치·사회질서가 급속히 변동하던 시기의 것이자 ‘조선민사령’(1912.3.18. 칙령 제7호)에 의해 일본의 민사법이 의용(依用)되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기초 사료적 가치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1) 민사재판 판결문의 현황

(1) 민사사건의 양적 규모

본 장에서는 법원도서관에서 출간한 『구한말민사판결집』 중에서 한성(부)의 판결문을 활용하여 1895년 재판소구성법 이후 정비된 민사법령체계와 사법제도 하에 생산된 민사사건의 양적규모를 살펴보고 한다. 먼저 1895년부터 1905년까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제기되고 처리되었는지를 보자. <그림 2>는 1895년부터 약 11년간 한성재판소에서 접수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한성재판소의 판결사건 수 및 종류별 비율



민사소송 사건 수는 1896년 462건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1899년 416건으로 전년보다 사건수가 2배로 급증하였다. 이후 1900년에 사건수가 급감하여 1905년까지 연간 200여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성재판소와 한성부의 잦은 합설과 분리에 따른 재판업무의 단속(斷續) 등에 영향을 받은 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변동에 따라 보수적 성격이 강화되었던 시기로 대한제국시기 이후 정치세력의 재판과정과 전제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률·제도의 제정 및 개편 과정이 진행되고 황제의 지위를 신성시하기 위한 상징 조작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898년을 전후로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신문이 보급되어 인민의 법의식이 급속하게 신장되자 법률·제도의 제정 및 개편과정의 초점이 민권운동의 성장에 대한 억압과 통제 및 황제권의 신성불가침에 맞춰지면서 소송이 억제되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성(부)재판소에서 다뤄진 소송사건의 종류는 일본의 재

관통계를 참고하여 필자가 종류를 나누었다.²⁵⁾ 살펴보면, 금전관계 소송과 채권·채무 소송에 관한 채송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는 답송, 보세(保稅), 전답송, 산송, 분묘 등이 해당한다.²⁶⁾ 증권은 가옥·논·밭 등 각종 문서와 관련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종 물품의 대금에 관한 소송도 비교적 많다. 금전관계는 각종 환전 관련 및 가옥의 전세사건의 판결건수가 의외로 적다. 한편 토지·가옥에 관한 사건 중에는 상속·이혼·입양·과양과 얽힌 분쟁들이 일부 있으나, 가족신분관계의 확인·이혼이나 과양 자체만 다룬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당사자의 국적별 인구구성

앞에서 살펴 본 것은 사건의 총량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사건당사자들의 국적별 인구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볼 것이

- 25) 일본의 재판통계는, 사건 종류가 금전, 토지, 건물·선박, 미곡, 물품, 증권, 인사, 雜事로 구분되어 있었다. ‘금전’사건은, 금전대차, 매매대금, 외상금, 地代, 가옥임대료, 손해배상 사건 등이, ‘토지’사건에는 토지의 소유·매매·소작·임대차·저당, 토지경계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인도·반환·소유권확인, 토지등기에 관련된 사건, ‘미곡’사건은 미곡의 매매·소비대차·임치 및 소작 등과 관련하여, 계약미곡, 소작미곡, 임대료미곡 등의 인도·반환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건물·선박’사건으로 분류된 것 중 건물에 관한 것은 건물의 소유·임대차·저당 등과 관련하여 건물의 인도·반환, 건물의 건축·수선·철거, 소유권 확인 기타 등기에 관한 사건이다. ‘물품’사건은 물품의 매매·대차·임치 등과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반환·소유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인사’사건은 家督相續, 이혼, 인지, 입양, 과양, 후견, 친족회 등에 관한 사건이다. ‘증권’사건은 株券, 事證書, 公債證書, 恩級 및 연금증서, 채권, 어음, 수표, 帳簿 기타 서류에 관한 사건이다. ‘雜書’사건은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 무효 확인, 계약확인, 청구이의, 보존신청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林屋禮二·菅原郁夫·林真貴子·田中亜紀子 編, 『統計から見た大正・昭和戦前期の民事裁判』(慈學社, 2011), 55면 이하.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호, 한국법사학회, 2012, 280-281쪽에서 재인용.
- 26) 문준영의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채송, 전택송, 산송(분묘)송을 3대 소송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필자가 다루고 있는 1895년~1905년간 한성재판소 민사재판 판결문에서는 분묘송, 산송이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하여 토지 사건 종류에 포함하였다.

다. 아래의 <표 1>은 갑오·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에 접수된 민사소송사건을 당사자의 민족·국적별로 집계한 것이다. 조선인간 사건(이하 ‘조-조’ 사건이라 함),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건(이하 ‘조-일’ 사건이라 함), 조선인과 청국인의 사건(이하 ‘조-청’사건이라 함), 조선인과 외국인의 사건(이하 ‘조-외 사건이라 함)으로 나누어서 다음 <표 1>을 작성하였다.

<표 1> 당사자의 국적별 민사소송 사건 수

연도	사건수	조-조	조-일	조-청	조-외	계
1895	사건수	217	2	1	0	220
	%	98.6%	0.9%	0.5%	0.0%	100.0%
1896	사건수	458	2	0	2	462
	%	99.1%	0.4%	0.0%	0.4%	100.0%
1897	사건수	298	11	2	1	312
	%	95.5%	3.5%	0.6%	0.3%	100.0%
1898	사건수	185	4	2	0	191
	%	96.9%	2.1%	1.0%	0.0%	100.0%
1899	사건수	406	7	3	0	416
	%	97.6%	1.7%	0.7%	0.0%	100.0%
1900	사건수	62	4	1	0	67
	%	92.5%	6.0%	1.5%	0.0%	100.0%
1901	사건수	149	3	0	0	152
	%	98.0%	2.0%	0.0%	0.0%	100.0%
1902	사건수	186	1	0	0	187
	%	99.5%	0.5%	0.0%	0.0%	100.0%
1903	사건수	208	11	0	0	219
	%	95.0%	5.0%	0.0%	0.0%	100.0%
1904	사건수	173	3	0	0	176
	%	98.3%	1.7%	0.0%	0.0%	100.0%
1905	사건수	373	15	2	0	390
	%	95.6%	3.8%	0.5%	0.0%	100.0%
계		2715	63	11	3	2792

* 출처 : 법원도서관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에 의해 작성한 것임.

* 비교 : ‘조-조’는 조선인간의 사건, ‘조-일’은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사건, ‘조-청’은 조선인과 청국인간의 사건, ‘조-외’는 조선인과 외국인과의 사건을 말한다.

인구구성상 당연히 조-조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일 사건, 조-청 사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조선 내 일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의 비율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개항장재판소 및 영사재판소가 신설되면서 조-일 간의 민사사건은 한성재판소에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였다.

조-일·조-청·조-외 사건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조선인이 피고측의 입장이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채송 및 금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일본인과 청국인의 비율은 ‘조·일통상장정’(1883) 및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4)과 같은 무역 장정의 결과 상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조-외의 사건에서 외국인은 러시아인과 미국인이었으며, 이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자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 상인보다는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또한 금전 소송이 주를 이루었다.

각 인구집단별로 상세하게 작성된 재판통계가 있다면, 각 인구집단별 분쟁 양상과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실태 그리고 조선인에게서 나타나는 분쟁과 법동원 양상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한말 민사판결집』과 『통계연보』로는 조선인·일본인·외국인의 당사자인 사건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만을 총량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3) 민사소송 사건의 종류

한성재판소의 민사법정에서 당사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서로 다투었을까? 먼저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민사판결 시스템’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재판통계를 산출해 이 시기 민사소송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2>는 한성재판소 제1심 소송사건의 종류별 건수와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²⁷⁾ 한성(부)재판소에서 다뤄진 소송사건의 종류

는 일본의 재판통계를 참고하여 필자가 종류를 나누었다.²⁸⁾

〈표 2〉 한성재판소 민사소송의 종류별 건 수

구분	건물	금전	물품	미곡	인사	증권	토지	기타	합계	
1895	건수	1	182	9	5	2	6	7	1	213
	%	0.5%	85.4%	4.2%	2.3%	0.9%	2.7%	3.2%	0.5%	100%
1896	건수	14	395	8	9	5	9	18	4	462
	%	3.0%	85.5%	1.7%	1.9%	1.1%	1.9%	3.9%	0.9%	100%
1897	건수	7	264	8	2	2	4	23	2	312
	%	2.2%	84.6%	2.6%	0.6%	0.6%	1.3%	7.4%	0.6%	100%
1898	건수	7	145	9	1	2	5	21	1	191
	%	3.7%	75.9%	4.7%	0.5%	1.0%	2.6%	11.0%	0.5%	100%
1899	건수	14	335	8	6	4	17	30	2	416
	%	3.4%	80.5%	1.9%	1.4%	1.0%	4.1%	7.2%	0.5%	100%

27) 사건명은 원래 판결서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판결철에 첨부된 판결목록에 기재된 것이다. 접수·판결 당시에 사건부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 재판제도 시행 후에 판결서철을 정리하고 판결목록을 만들면서 재판소서기 등이 적절한 사건명을 붙인 것이라 추측된다.

28) 일본의 재판통계는, 사건 종류가 금전, 토지, 건물·선박, 미곡, 물품, 증권, 인사, 雜事로 구분되어 있었다. ‘금전’사건은, 금전대차, 매매대금, 외상금, 地代, 가옥임대료, 손해배상 사건 등이, ‘토지’사건에는 토지의 소유·매매·소작·임대차·저당, 토지경계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인도·반환·소유권확인, 토지등기에 관련된 사건, ‘미곡’사건은 미곡의 매매·소비대차·임치 및 소작 등과 관련하여, 계약미곡, 소작미곡, 임대료미곡 등의 인도·반환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건물·선박’사건으로 분류된 것 중 건물에 관한 것은 건물의 소유·임대차·저당 등과 관련하여 건물의 인도·반환, 건물의 건축·수선·철거, 소유권 확인 기타 등기에 관한 사건이다. ‘물품’사건은 물품의 매매·대차·임치 등과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반환·소유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인사’사건은 家督相續, 이혼, 인지, 입양, 파양, 후견, 친족회 등에 관한 사건이다. ‘증권’사건은 株券, 事證書, 公債證書, 恩級 및 연금증서, 채권, 어음, 수표, 帳簿 기타 서류에 관한 사건이다. ‘雜書’사건은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 무효 확인, 계약확인, 청구이의, 보존신청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林屋礼二·菅原郁夫·林真貴子·田中亜紀子 編, 『統計から見た大正・昭和戦前期の民事裁判』(慈學社, 2011), 55면 이하.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호, 한국법사학회, 2012, 280~281쪽에서 재인용.

1900	건수	1	47	0	2	0	2	14	1	67
	%	1.5%	70.1%	0.0%	3.0%	0.0%	3.0%	20.9%	1.5%	100%
1901	건수	4	123	3	0	1	11	8	2	152
	%	2.6%	80.9%	2.0%	0.0%	0.7%	7.2%	5.3%	1.3%	100%
1902	건수	4	156	6	1	2	11	7	0	187
	%	2.1%	83.4%	3.2%	0.5%	1.1%	5.9%	3.7%	0.0%	100%
1903	건수	2	176	7	2	1	13	18	0	219
	%	0.9%	80.4%	3.2%	0.9%	0.5%	5.9%	8.2%	0.0%	100%
1904	건수	3	135	10	1	0	14	12	1	176
	%	1.7%	76.7%	5.7%	0.6%	0.0%	8.0%	6.8%	0.6%	100%
1905	건수	12	278	14	5	4	36	35	6	390
	%	3.1%	71.3%	3.6%	1.3%	1.0%	9.2%	9.0%	1.5%	100%
계		69	2242	82	34	24	128	193	20	2792

- * 출전 : 법원도서관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에 의해 작성한 것임.
- * 비고 : 굵은 글씨는 사건수가 많은 상위 2개를 표시한 것임.

〈표 2〉에서 보듯이, 금전소송이 가장 많고, 토지소송을 합하면 전체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금전소송은 채송과 어음 소송으로 적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소송은 답송, 보세(保稅), 전답송, 산송, 분묘 등에 관한 소송이다.²⁹⁾ 증권소송은 사증권, 장부, 기타 서류 관련 소송이다. 물품소송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이 많다. 미곡사건은 작황, 경기변동, 투기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건 종류별 구성비는 신 재판소구성법 시기 및 보호국기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³⁰⁾

한편 토지·가옥에 관한 사건 중에는 상속·이혼·입양·과양과 얽힌 분쟁들이 일부 있으나, 가족신분관계의 확인·이혼이나 과양 자체만 다

29) 문준영의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채송, 전택송, 산송(분묘)송을 3대 소송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필자가 다루고 있는 1895년~1905년간 한성재판소 민사 재판 판결문에서는 분묘송, 산송이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하여 토지 사건 종류에 포함하였다.

30) 병합 이후의 민사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문준영 2012, 위의 글 참조.

론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각 사건별로 세부 항목의 구성분포를 알 수 있다면, 관련 분쟁의 내역과 분쟁 종류의 변화 추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테지만 아직 그런 정보를 담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윤곽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2) 민사재판 판결문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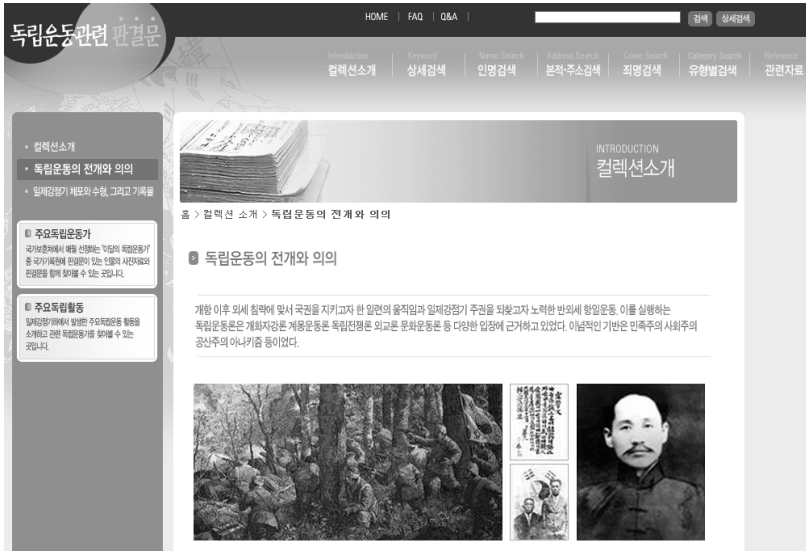
(1) 국가기록원 관리 현황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정보 및 재생산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콘텐츠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등 IT·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2012년에는 나라기록 포털뿐만 아니라 SNS,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장기록물을 교육·학술·정책정보로 제공하고 있다.³¹⁾

이 중에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컬렉션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결문 중 의병·군자금 모집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관련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하였다. 일제강점기 판결문 등 행형기록물을 독립운동과 관련 기록정보로 활용하여 국민 권익 증진 및 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기 구축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컬렉션을 전문 번역하여 제공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의 내용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31)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08, 254쪽.

〈그림 16〉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컬렉션



다음으로서는 ‘한성재판소’에 대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은 총 74건이다. 〈표 3〉은 ‘한성재판소’ 관련 기록물을 기록물 철, 기록물 건, 기록정보콘텐츠, 주제별 검색, 웹페이지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3〉 ‘한성재판소’ 관련 기록 서비스 현황

분류	수량	주요사료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유형
기록물 철	1	·한성재판소-건양원년구월	-	1896	문서
기록물 건	3	·한성재판소 ·한성재판소로암환해소 ·한성재판소로격환해소재물 절취(신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1896 1907 1907	문서
기록정보 콘텐츠	56	·재판소구성법 ·건축도면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2008 - 2009	시대·생활 콘텐츠 DB 콘텐츠 DB 콘텐츠

주제별 검색	7	·재판소구성법(정책/제도, 법무/법제) ·재판소설치법 공포(정책/제도, 공공질서) 지방법원(조직/기구, 법무/법제)	-	-	-
웹페이지	7	국정분야별 검색→공공질서, 법무/법제	-	-	-

2008년 4월에 국가기록원은 웹서비스에 ‘이달의 기록’이라하여 ‘재판소구성법(1895년4월제정)’을 기록정보콘텐츠화하여 제공하였다.

기록포털 사이트에서는 기록물을 원문DB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약식 기술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기록물을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다른 관련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리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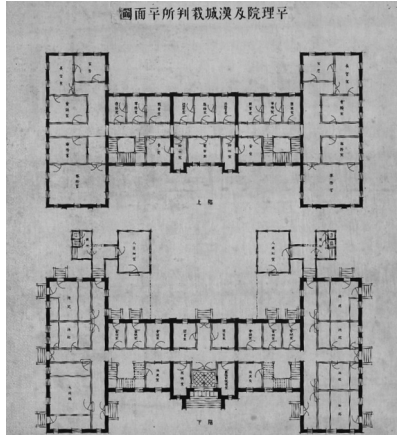
기록정보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축 도면’은 고적·관사·사법·행형 등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컬렉션으로 꾸며져 있다. 주제별 해제 및 3D복원, 기록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성재판소’를 검색하면 한성재판소 청사를 완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부속 공사 이력의 공사명칭 및 연도·기공·준공·기간·청부금액(円)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한성재판소 완공 이후의 1906~1907년 사이에 추정되는 정면도이다.³²⁾

32)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DetailSearch>.

〈그림 4〉 평리원과 한성재판소 정면도



〈그림 5〉 평리원과 한성재판소 평면도



이 기록물을 통해 일제가 식민통치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청사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설계와 공간구성까지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도면이 공개되어 청사의 전모와 신축 이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는 갑오개혁기-일제강점기(1895~1945)의 민사재판 관련 판결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879건의 민사 판결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본고와 관련 있는 갑오개혁기-일제강점기(1895년~1905년)의 민사판결 원본은 총 1,192건이다. 아래의 〈표 4〉는 위 시기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재판소(생산기관), 사건명, 사건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고등법원과 평리원의 민사재판 판결문만을 소장하고 있다.

〈표 4〉 국가기록원 소장 민사재판 판결문 현황(1895년~1905년)

생산년도	철제목	재판소	사건명	건	총건수
1895	민사판결 원본	고등법원	금전	13	192
			물품	8	
			미곡	4	
			산송	4	
			증권	3	
			채송	33	
			토지	115	
			기타	12	
1897	민사판결 원본	평리원	가사송	8	227
			금전	26	
			물품	21	
			미곡	3	
			산송	24	
			증권	3	
			채송	46	
			토지	88	
토지·가사	8				
1901	민사판결 원본	평리원	금전	19	247
			물품	13	
			미곡	2	
			산송	78	
			채송	46	
			토지	89	
1903	민사재판 원본	평리원	건물	4	319
			금전	30	
			물품	24	
			미곡	10	
			산송	67	
			인사	10	
			증권	2	
			채송	22	
			토지	127	
			토지·가사	2	
			토지·미곡	6	
기타	15				

1904	민사판결 원본	평리원	건물	4	207
			금전	6	
			물품	15	
			미곡	4	
			산송	49	
			인사	3	
			증권	4	
			채송	30	
			토지	88	
기타	4				

* 출전 :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로 작성된 자료임(2013. 12. 16 기준임)

* 비고 : 굵은 글씨는 사건수가 많은 상위 2개를 표시한 것임.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는 공개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일차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고가치 기록물을 콘텐츠화하였다. 이용자만족 정보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정보 활용 체계 개선은 이용자 만족 정보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정에 관련된 정책 및 기록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법원도서관 관리 현황

법원도서관은 ‘민사판결문 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부터 인터넷서비스³³⁾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민사재판 판결문을 DB로 구축했다. 1889년부터 1918년까지 민사재판 판결문 14,641건이 담겨 있으며, 분량은 43,576쪽에 이른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 시기 민사재판 판결문을 연도별, 법원별, 당사자별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다.

판결문을 가공하지 않고 원문 DB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서비

33) <http://library.scourt.go.kr>(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스(일자별·인명별·재판소별·상세검색)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에 사용된 언어가 현재의 문투와 달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어사전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889년부터 1918년까지의 판결문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성재판소의 판결문이 현저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민사재판 판결문 서비스의 핵심은 민사재판 판결문을 보존 관리하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는 접할 수 없었던 역사기록물의 생생한 원문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갑오·조선총독부 시기의 역사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한문으로 작성된 판결문은 역사기록물이 주는 생생함에 반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저해시킨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필사체, 고어체로 된 역사기록물의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문서비스 이전 화면에 메타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 <그림 6>은 ‘민사판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제시되는 역사기록물은 문서 사료를 타이핑한 발췌문에 지나지 않는다. 텍스트가 주는 정보는 전달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생생함’은 반감되는데 반하여 법원도서관과 연계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민사재판 판결문의 공개 문제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에서 “한성재판소 민사재판 판결문”은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 명목으로 비공개되고 있다. 갑오·대한제국기의 민사재판 판결문은 생산된 지 120년이 지났으나, 재판기록이 현행 정보공개법 규정에 묶여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8년 ICA 마드리드 대회에서는 기록공개와 관련한 ‘30년 원칙’을 채택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하였다.³⁴⁾

〈그림 6〉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 원문 메타데이터 서비스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사건번호	건양(建陽) 원년 민제67호, 제68호		문서유형	판결서	
사건명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원고	인명	이석형(李錫恒)	피고	인명	신재형(申在亨)
	나이			나이	
	신분	상민(商民)		신분	상민(商民)
	주소	경성(京城) 중부(中部) 모동(毛洞)		주소	경성(京城) 중부(中部) 이천(麗廬) 뒤
	대리인			대리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 6600냥을 갚아야 함.				
판결일자	1896년 01월 28일 (건양(建陽) 원년 1월 28일)				
재판소명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명	최준식(崔俊植)				
참여명	서기 목원성(睦源星)				
기타					

민사재판 판결문의 공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째, 30년 이상 지난 역사기록물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역사기록물(Archives)과 현용기록

- 34) ICA는 각국의 기록물관리 관계기관에서 자료의 열람을 제어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학술연구자의 필요에 응하여 열람제도를 적용할 것, 모든 부당한 열람 제한을 없앨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열람 규제 완화를 권고하였다.
- a) 일반적인 비공개 기간이 기록의 생산부터 열람개시까지 3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보류(reservation)를 명기할 것
 - b) 무엇보다 장기간 비공개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필요한 것만 장기비공개 기간을 설정하되 8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c) 기록의 특정범위에 대해 가능한 한 일반적인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로운 열람을 제공할 것
 - d) 공식적인 공개 제한이라면 개별적인 특별인가 규정을 만들고, 열람 거부는 제도적인 공표를 통할 것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 연구』, 2002, 152쪽.

물(Records)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 후 30년이 넘는 역사기록물조차 공개여부는 현행 ‘정보공개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에 대한 공개 문제가 정부기관 내에서도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법원도서관 ‘민사판결문시스템’을 통하여 전문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기록원의 경우는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각기 다른 법 적용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에게 자료조사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결국 갑오·대한제국기의 연구를 저해하며, 역사연구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기록물의 색인어 작업은 고사하고 일괄 목록리스트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중복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이용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립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목록작업을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민사재판 판결문의 정보공개청구는 형사재판 판결문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가 극히 적다. 이는 민사재판 판결문의 소장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국가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또한 민사재판 판결문도 형사재판 판결문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과 같은 독립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검색상의 한계, 해제 부재, 국가기록원의 원문서비스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

4.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열람 및 활용 방안

역사기록물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의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³⁵⁾ 역사기록물 중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갑오·대한제국기 민사판결 기록물은 당시 민중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기록물관리기관은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을 보존만이 아닌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열람·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민사재판 판결문의 열람 유형

기록물의 다각적인 열람·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사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설명책임성 및 증거로서의 정보에 대한 비전문가의 문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열람의 유형은 기록물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열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학문적 연구를 위한 열람

가장 먼저 연구 활용을 위한 학문적 열람은 역사기록물에 내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의도 및 생산 목적, 생산기관에 대한 제도발전과 그 흔적이 투영된 기록물의 유기적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35) T. 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ques*,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242쪽.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전문성 있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주제에 친착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개입보다는 본인이 직접 기록물에 접근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 활용을 위한 이용자들은 기록물의 건별 검색보다는 집합적 계층 분류에 따른 포괄적 검색을 선호하고, 이용 목적이 명확하며, 주제·인물·사건에 따른 기록물 검색 및 활용을 선호한다.

연구자는 주로 학위·학술단체의 논문 작성 및 프로젝트 연구 등을 위하여 역사기록물을 활용한다. 이들은 대체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또는 새로운 기록과 사실을 중시하며, 연구자 개인 및 연구단체의 성과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담긴 정보를 전달한다. 이들에게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록 서비스, 심층적인 안내와 면담 서비스, 다양한 정보로의 안내를 돕고 지속적인 이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서 나아가 심층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역사기록물이 제공하는 역사적 상황과 함께 기록물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후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집단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후자는 간접 이용자로서³⁶⁾ 역사기록물을 직접 이용하여 작성된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을 접함으로써 제2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기록물을 활용한 활발한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36) Mary Jo Pugh, 설문원역, 『기록정보서비스』, 진리탐구, 2004, 33~34쪽. 간접 이용자는 기록에 담긴 역사 정보의 잠재적 수혜자이며(Paul Conway, *American Archivist* 49, 1986), 실제로 기록을 이용하는 연구자의 수는 적지만 이들의 작업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가져온다.(Page Putnam Miller, 1989)소장 기록에서 추출한 정보와 증거를 전달하는 결과물의 유형에는 도서,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 학위논문, 족보, 연설문, 학기말 논문, 영화, TV다큐멘터리, 슬라이드쇼, 전시, 법령 요약, 환경영향보고, 기타 정책 문서 등이 있다.

학계에서는 그 동안 법원의 형사재판기록과 검찰의 사상범에 대한 조사 기록은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해 많이 활용되었다. 심지어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위 기록을 활용하였다. 반면에 법원의 민사재판 판결문을 이용한 연구는 그동안 매우 드물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기록과 비교하면, 연구자들이 민사재판기록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형사재판기록은 대부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으로 영인 발간한 반면에, 민사재판 기록은 접근하기 어려웠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의 민사판결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 성명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법원도서관의 민사판결문은 최근에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거나 『구한말민사판결집』으로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갑오·대한제국시기의 민사재판 판결문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사례들이 역사학과와 법사학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역사학과에서는 토지소송 관계를 바탕으로 토지소유권의 추이를 고찰한 연구가 있고,³⁷⁾ 법사학과에서는 임대차 분쟁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권과 전세관습 등을 연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³⁸⁾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본 사료이므로 연구자들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2) 비전문가 집단의 열람

비전문가 집단의 열람 유형은 학문적 연구를 위한 열람 유형과는 달리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역사기록물보존소를 내방하는 비전문가 집

37) 이승일,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의 토지권 분쟁과 처리」, 『역사와 현실』 89호, 2013.

38)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관습-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법사학연구』 48호, 2013; 권재문, 「전세권의 법적 성질-구한국의 민사판결에 나타난 전세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9호, 2014.

단의 열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특정 기록물의 내적인 면보다는 기록물의 보존 및 기록물의 접근 방법 등 외적인 면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증빙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문 열람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사재판 판결문과 대비되는 형사재판 판결문의 열람 횟수는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상들의 명예회복 및 토지 소유관련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비전문가 집단은 실질적인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데, 이들은 열람 신청에 익숙하지 않으며 기록물의 유기적인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열람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서비스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리드에 의한 열람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별다른 지식이 없다고 해도 학예사나 도슨트를 반드시 동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나 이에 준하는 전문가의 안내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이곳에서 전개되는 모든 실험적 경험(원본문서들이 사례로 제시되는 수업이나 젊은 학생들에게 기록물의 형성과정 그리고 기록물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 등)에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중재가 필요하다.³⁹⁾ 물론 비전문가 집단은 열람 수단이나 연구 방법론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의 열람은 기록물보존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기록물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다. 미국립기록청(NARA)에서는 기록물을 열람하기에 앞서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으로써⁴⁰⁾ 비전문가집단의 기록물 열람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9) 김정하, 『남유럽의 전통기록물관리』, 지중해지역원 인문총서, 이담북스, 2013, 84-86쪽.

40) 국가기록원, 『기록인』 28호, 2014.

2)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 방안

민사재판 판결문과 같은 역사기록물의 활용을 위해서 판결문에 형성된 기록물 내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세 가지 관점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활용 방안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과 기록간의 맥락관계를 인식하여 사실을 복원하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개입에 앞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 판결문에 대한 유용하고 실제적인 정보가 없어 기록물의 이용·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민중들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증빙·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록물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즉, 민사재판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보다 특수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은 인적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사회구조인 신분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관련 후손들은 공개를 원치 않기도 한다. 즉, 일반 이용자에게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이들 판결문의 실물을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기록물을 자료집 형태로 출간하기 이전에는 일반인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갑오·대한제국기의 폭 넓은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보존을 위한 영구기록물’의 성격에서 동시에 ‘이용을 위한 영구기록물’의 성격⁴¹⁾으로 변하기 위해서 DB검색정보·MF 및 PDF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생산된 민사재판 판결문은 한문 또는 국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1908년 이후 일본어 초서가 많아 이들 기록물을 이용하여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록관리차원에서 기초조사 작업을 토대로 이 시기의 문체를 현대한글로 정서 및 국역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각각의 기록물은 정리되지 않거나 그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활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없다. 영인·색인·해제·국역과 목록작업 이외에도 기록물의 전체상을 알 수 있도록 정리(arrangement)·기술(description)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검색 보조도구의 개발 등 기록물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찍이 기록물관리제도가 발전한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바탕으로 역사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 현존하는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은 이들의 영인·색인·해제·국역과 목록화된 상태에 따라 연구의 어려움이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기록물의 경우에는 낱장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그 내용을 포괄하는 맥락(context), 생산배경 등에 대한 정보가 기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색도구의 데이터베이스가 검색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⁴²⁾ 또한 연구자들이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한 원문을 전부 공개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기록물관리 상태는 작업자의 전문성 여부나 적절한 수단의 유무에 따른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알게 모르게 문화정책의 선택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1) 이미선, 「조선왕실보첩류 활용을 위한 기록물 현황조사 : 장서각소장 『선원계 보기략』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008, 12, 226쪽.

42) 정혜경·김성식,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역사기록의 정보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 166쪽.

전반적으로 수집·정리 사업이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연구자들도 효율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실무자들도 학계의 역량을 활용하고 학계와 교섭할 수 있는 항상적 통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⁴³⁾ 이러한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은 모두 단시일에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및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기록물관리전문가는 기록물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와 연구에 힘쓰고, 연구수단으로써 전문연구자나 일반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정리하고, 가공하며 간행하여 널리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역사학 등 주요 학문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문화유산으로써 한국인들의 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2) 제도의 정비

궁극적으로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은 역사기록물의 다양한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모색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기록물관리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연구자들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민사재판 판결문을 이용하게 되면 기록물의 맥락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언급하였듯이 기록물은 낱장에 들어 있는 내용보다 그 내용을 포괄하는 맥락(context), 생산배경 등에 대한 정보가 기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는 동일한 민사재판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방식과 범위가 상이하다. 민사재판 판결문과 관련해서 법원기록보존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사료 원본을 그

43) 정용욱, 「역사학 연구와 기록」, 『기록학연구』 9호, 2004, 225쪽.

44) 이승일, 『기록의 역사 :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 혜안, 2011, 8쪽.

대로 공개 노출하고 있으나,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묶어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이전의 민사재판 판결문과 같은 역사기록물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역사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정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록물에 대한 전제가 기반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역사기록물에 대입하기에는 많은 모순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에 개정된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은 종전의 대법원 내규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즉,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제57조 및 제59조⁴⁵⁾와 종전의 ‘법원사자료의수집·관리및법원사편찬에관한내규’⁴⁶⁾는 상충된다. 즉, 이 내규에서 정의하는 자료는 2013년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의 사법부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중복되며 또한 기록관리법상의 행정박물

-
- 45)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법행정·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법원기록물관리규칙」, 2013년 개정.
- 46) 이 내규는 법원조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 법원사자료를 조사·수집·보존·전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사를 연구·편찬·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사자료」란 법원역사의 연구자료가 되는 기록물(재판서·사건기록·부책·문서·도면·도서·사진·시정각물·구술채록물·전자기록물)과 각종 행정박물류(관인·현판·사무용품·사무기기·법복·명패·기념품 등 각종 물건)를 말한다. 「법원사자료의수집·관리및법원사편찬에관한내규」, 제정 1998.08.28 내규 제256호, 전부개정 2010.03.12 내규 제408호, 개정 2014.01.22 내규 제443호.

과도 일부 중복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법원기록보존소와 법원도서관에서 이중으로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뿐만 아니라 전근대 판결문을 수집할 수 있으며, 해제·영인본을 간행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규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복을 야기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도서관에서 수행해 온 법원사자료 수집 및 편찬 업무 기능을 법원기록보존소로 일원화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사자료의 수집 기능은 기록관리법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당안제도는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안관으로 구성된 당안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록물관리 선진국들은 국가기록물관리의 중심을 역사·문화적 가치의 공공기록물관리에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업무·행정적 활용의 기록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록물관리와 역사기록물관리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의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록물관리와 역사기록물관리를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후자에 비해 전자의 관리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역사기록물은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소장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역사기록물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문화기관들의 역사기록물관리는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사실상 역사기록물이 전문연구자들에게만 열려 있을 뿐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 활용의 다양한 서비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편화되고, 또 흩어져 관리되는 역사기록물의 열람·활용을 위해서

47) 이영학외, 『과거사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국가기록원 정책연구보고서, 2014.

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기록물관리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업무·행정적 가치 모두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역사기록(영구기록)을 총체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통합적인 역사기록물 관리 기관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⁴⁸⁾

민사재판 판결문에 한정해서 제안한다면, 국가기록원과 법원도서관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사재판 판결문은 한 국가기록물관리기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정보제공서비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3) 전문성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체계에서는 행정기록물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기록물관리자 교육 및 대학교의 기록물관리 석·박사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역사기록물관리에 근거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⁴⁹⁾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에 대한 교육은 그 기록물을 직접 소장·보존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될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고전번역원에서는 역사기록물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름과 겨울 단기 과정 코스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의 당안관련 법규에 의하면, 당안관은 당안의 접수와 수집, 정리와 관리, 활

48) 이영학 외, 앞의 글, 2014.

49)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즉 역사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전문가가 아니라 현용과 준현용 단계의 행정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사의 양성에 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출간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참조.

용과 열람의 제공 등을 주된 업무로 할 뿐만 아니라, 당안 사료의 편집, 출판, 역사서의 편찬과 개수 등 연구 활동을 통해 당안 사료의 해석을 선도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다.⁵⁰⁾ 물론 역사기록물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법 조항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정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잠재적인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⁵¹⁾ 폭 넓은 연구를 보다 더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해당 기록물의 이해를 전제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전산화 정보화의 작업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들 자료를 전산화하여 전산·정보매체로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활용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시대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도입되어 효율적인 대규모의 체계적 종합·정리와 또 다른 측면의 공개와 이용의 단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⁵²⁾ 민사재판 판결문과 같은 역사기록물은 유일본 그 자체로서 종이의 질감 및 생산 당시의 숨결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존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역사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보존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연구방법론을 설정하고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역

50) 이원규, 「동양의 기록물관리제도의 전통과 오늘 : 중국을 중심으로」, 『기록보존』 10호, 정부기록보존소, 1997.

51) 김정하, 위의 글, 186~188쪽.

52) 이미선, 「조선왕실보첩류 활용을 위한 기록물 현황조사 : 장서각소장 『선원계보기략』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2호, 2008, 266쪽.

사기록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역사기록물에 대한 학술적이고 국민적인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관련 학계의 전문 인력과의 협업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산화 정보화의 작업은 결국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을 잘 조직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좁게는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에서 넓게는 대한민국 역사기록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갑오·대한제국기의 사회사 연구가 미진한 현실에서 역사기록물의 해제를 위한 전문성의 강화는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전반을 활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5. 맺음말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본고에서는 민사재판제도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의 실태를 ① 갑오개혁-대한제국 이전과 ② 1899-통감부 이전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1895년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된 재판제도에 의해 우리나라 역사상 ‘재판과 행정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의 기본 원칙이 세워졌으며, 재판권이 일원화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898년 8월부터 법부와 고등재판소 관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899년 5월 말

법부관제와 재판소구성법을 모두 개정하였다. 또한 재판 관할 구역의 잦은 이합(離合)이 일어났으며, 재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혁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복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갑오·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민사재판 판결문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민사재판 판결문의 양적 현황을 사건의 종류와 소송당사자의 국적별 인구로 나눠서 살펴보고, 판결문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1895년부터 약 11년간의 민사재판 판결문의 양은 총 2,700여 건이었으며, 사건의 종류는 총 8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과 법원도서관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역사기록물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의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조응하는 활용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열람으로는 국가기록원 및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의 기록학적 분류와 기술이 전제된 목록을 생산하여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역사기록물을 총체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통합적인 역사기록물 관리 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강화로 역사기록물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민사재판 판결문의 잠재적인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문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갑오·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본 논문은 소송당사자간 분쟁의 종류와 양상이 당시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기록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 사료의 희소성 및 난해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민사재판 판결

문에 나타나는 소송 당사자 간의 소송 전략, 지방관·권력자의 행태, 그리고 금전·부동산(건물, 토지), 물품 소송들에서 엿보이는 사회상은 현황 파악이라는 목적 하에 숫자 속에 가리어졌지만, 갑오·대한제국기에 일어난 민사 사건들은 각 분야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이며, 우리의 집단적 기억의 표상이다. 역사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못지않게 이러한 역사기록물을 이용가능하게 정리하는 일과 이 기록물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Method of Utilization on the Civil Litigation of Pre-Colonial Korea, 1894-1905 :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seong Court

Hwang, Oi-jung · Lee Young-Hak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civil litigation between 1895 and 1905, during which the traditional Korean legal system had undergone a significant reform until it was finally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colonial counterpart. Civil litigation is important in historical archiving, in that we can understand archiving over time, the governing structure and our national identity. However at times we are not able to use them practically. The ultimate goal of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 archives is to use them practically. The effective use of archives should be supported by their systematic management and access to a high standard.

Therefore, the second main them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o unveil civil litigation to the public for professional studies. Firstly, we should make a list of civil judgments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Secondly, we should inform people of the civil justice rulings through publicity activities such as contents creation, exhibition, documentary creation, education and so on. Thirdly,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civil litigations should be preserved apart from records. Fourthly, I should propose that we offer curriculum about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history archives

for strengthening of our expertise.

Civil judgment of Guhanmal-Japanese is invaluable as it explains the history of our culture. Result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will be a valuable resource and invaluable to study.

Key words : Archives, Hanseong court, Civil trial

